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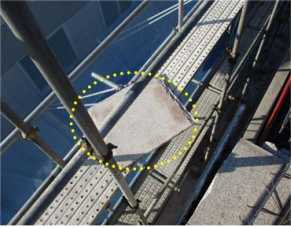
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[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]

- 점검일시 : 2018.12.14 (금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한종수,이태형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데크플레이트 단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추락사고 위험이 있으니,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 할 것</p> <p>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01(안전난간)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조건)</p>		2018.12.21	
		<p>데크플레이트 단부 안전난간 설치.</p>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이동식비계의 안전난간 및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어 추락사고 위험이 있으니, 안전난간 및 아웃트리거를 설치 후 작업을 할 것.</p> <p>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7(이동식비계)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(이동식비계)</p>		2018.12.21	
		<p>건물옥상층 이동식비계 반출 및 사용시 이동식비계용 아웃트리거 사용.</p>	

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돌출된 파이프에는 마감캡을 설치하여 근로자 상해를 방지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</p>		<p>2018.12.21</p> <p>돌출된 파이프에 마감캡 설치.</p>	
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경사로는 경사각을 30도 이하로 하고 15도 초과 시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3(가설경사로)</p>		<p>2018.12.21</p> <p>미끄럼방지장치 추후 설치예정. 안전난간으로 대체중.</p>	
<p>○ 전도재해 예방</p> <p>- 일자형 사다리는 통로용으로만 사용하기 바람. 아웃트리거가 없는 사다리는 사용 시 전도의 위험이 있으니 보완하거나 반출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(일자형 사다리)</p>		<p>2018.12.21</p> <p>사다리 반출.</p>	
<p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</p> <p>- E/V Pit 철골설치 구간에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되지 않고, 근처에서 골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, 근로자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 할 것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방지)</p>		<p>2018.12.21</p> <p>12.26 설치예정.</p>	

<p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</p> <p>- 현장 외부에 설치한 가설비계 발판에 자재(석재 등)가 놓여있어 낙하시 근로자 상해가 우려되니 이동 조치하기 바람, 작업발판에는 지장물(공구 등)이 없도록 교육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(계단의 폭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(작업발판 및 계단)</p>		<p>2018.12.21</p> <p>가설비계 발판 주변 정리.</p>	
<p>○ 기계기구 안전</p> <p>- 현장에 반입되는 기계·기구는 반입전 검사를 실시하고, 정기검사(매월)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부착 관리하기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0(투광등)</p>		<p>2018.12.21</p> <p>추후 들어오는 건설기계 반입전 검사예정.</p>	<p>NO IMAGE</p> 